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9드단2085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갑

피 고 1. 을

2. 병

변 론 종 결 2020. 7. 7.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 사이에 2018.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공유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병은 원고에게 35,014,43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2006.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A국적이었던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원고보다 25세 연상이고, 이혼경력이 있다는 피고 을을 소개받았는데, 실제 피고 을은 삼혼으로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정과 피고 병을 두고 있고, 만성 B형 간염과 간암을 앓아 혼인 전 한 차례 수술을 받고 퇴직 후 시골에서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7. 입국한 후 피고 을의 혼인 전력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 을만 믿고 입국한 상황에서 그 무렵 자녀를 임신하자 마음을 다잡고 피고 을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가사와 자녀양육까지 도맡아 왔고, 어느 정도 생활이 적응되자 인근 식당에 나가 종업원으로 일하며 2011. 귀화하였다.

라. 한편 피고 을이 2013년 봄 다시 암 수술을 받으며 병원을 자주 찾게 되자, 원고와 피고 을은 2013. 병원이 가까운 부산으로 이사하여 그 무렵 병원 인근에서 식당을 개업해 운영하였다.

마. 피고 을은 2016. 5.경 다시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을은 2016. 8.경 식당을 정리한 후 2016. 8.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8,300만 원에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을은 2017. 4.경 가게를 양수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개업한 후 큰 다툼 없이 지내왔는데, 2018. 2.경 피고 병이 가게를 얻어 동종 업종인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피고 을이 위 가게 물색, 인테리어, 식당 운영 등 전반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며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비우는 일이 늘자 다툼이 생겼다.

사. 원고는 전혼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한다고 생각해 언짢은 기색으로 피고 을을 몰아세웠고, 피고 을도 평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신, 전혼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시댁과의 관계 등으로 원고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고 흥분하여 원고를 때리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아. 피고 을은 이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처음에 거부하던 원고도 피고 을의 행동에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한 후 2018. 10. 협의이혼에 앞서 재산분할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무산되었다.

자. 피고 을은 당일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다음날인 2018. 11. 1.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피고 병에게 증여하고 당일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원고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가게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고 2019. 1. 28. 피고 을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9드단201156)를 제기하고, 이어 2019. 6. 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도 제기하였다. 피고 을도 2019. 2. 1. 원고를 상대로 반소(이 법원 2019드단201392,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카.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100,339,000원에 피고 병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20. 6. 19.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병에게 각 33,834,214원씩 배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병은 그 무렵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타. 관련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2020. 11. 10.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되, 각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취지

2. 피고 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1/2, 35,014,437원)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을에 대한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자료 등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파탄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피고 을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행위를 통해 피고 을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을의 사해의사 및 피고 병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

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채권액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병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별지
이하 생략